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

(이필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-107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11. 19.

발의자 : 이필레·김순금·오진아
유동균 의원(4명)

1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 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등으로 함(안 제3조)
- 나.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함(안 제4조)
- 다.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)
- 라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하고,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함(안 제8조)

3. 관계법령

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(법률 제11248호, 2012. 8. 2 시행) 제5조
- 나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(법률 제11141호, 2012. 9. 1 시행) 제69조
- 다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(법률 제11141호, 2012. 9. 1 시행) 제9조

4. 조 례 안 : 불임

5. 예산조치 : 필요

- 가. 소요예산 : 70,000천원
- 나. 산출기준 : 월평균건강보험료 4,630원×1,260가구×12월=70,000천원

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2. 11. 20 ~ 11. 26(제출된 의견 없음)
- 나.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: 불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저소득주민”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(이하 “보험료”라 한다)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로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.

1.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
3. 한부모가족 세대
4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

제4조(대상자 선정)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(이하 “지사장”이라 한다)은 매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.

제5조(조사)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상황, 건강상태,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시기) 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,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.

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.

제7조(예산확보 및 지원) ①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환수)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“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”



마포구



수신자 마포구의회의장
(경유)

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관련 의견 회시

1. 마포구의회-5224(2012.11.19)호와 관련입니다.
2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」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붙임과 회시합니다.

붙임 :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서 1부. 끝.



시행 사회복지과-43720 (2012.11.22.) 접수 마포구의회-5305 (2012.11.23.)
우 121-83 서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(성산동) /www.mapo.seoul.kr
전화 02-3153-8872 /전송 02-3153-8899 / bokgisa@mapo.go.kr / 공개
11/22 이준범

협조자

시행 사회복지과-43720 (2012.11.22.) 접수 마포구의회-5305 (2012.11.23.)
우 121-83 서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(성산동) /www.mapo.seoul.kr
전화 02-3153-8872 /전송 02-3153-8899 / bokgisa@mapo.go.kr / 공개



<사는 구는 달라도 번호는 하나! 120>
<앞으로는 집에서 「민원24」로 처리하세요!>



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서

조례안 제명	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
발의 의원	이필레 의원 외 3인
소관부서	사회복지과
상임위원회명 및 상정예정일	복지도시위원회
사전보고 단계	
검토의견	조례 제정에 동의함
예산편성현황	소요예산 7천만원을 2013년 예산에 편성하였음